

이해상충 및 정보차단벽 관리 지침

사규번호 52-04-2
소관부서 컴플라이언스팀

제 정	2009. 05. 04
전면개정	2010. 04. 01
개 정	2012. 09. 03
개 정	2013. 05. 23
개 정	2019. 03. 14
개 정	2021. 05.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 법 시행령 제50조 및 「내부통제기준」 제4편에 의거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차단벽을 구축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라 함은 내부통제기준 제57조에 따라 회사가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설정한 부서를 말한다.
 2. “예외적 교류의 방법”(이하 “Wall Cross”라고 한다)이라 함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내부통제기준 제63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금융투자회사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한 정보 및 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말하며, “메신저”란 전단의 정보 및 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말한다.
 4. “관계법령 등”이라 함은 법,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사규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관부서)

이 지침의 주관부서는 준법관리 부서로 한다.

제3조의2(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 ① 준법관리 부서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 통제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인 준법관리 부서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해상충관리 기본원칙

제4조(투자자 이익 우선)

- ①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투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5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사전에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야 하며, 이해상충발생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이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이해상충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 발생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당 투자자에게 공시, 홈페이지 게시, 녹취가 가능한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FAX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업무발생 전에 이해상충 발생가능업무 및 관련투자자 등을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은 업무시행 전에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추어야 하며,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서면보고가 어려울 경우 유선보고를 한 후 사후 서면보고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당해 거래를 중단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관련 업무의 중지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3 장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제7조(정보차단벽의 정의)

- ①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다른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 ②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경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1개월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해제 요청서” [별표2]를 작성하여 준법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준법관리 부서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8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사무 공간의 분리
 -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 내부통제기준 제60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 ③ 회사는 예외적 교류 허용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예외적 정보 제공 허용 승인 요청서”[별표3]을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예외적 정보제공 허용 승인의 변경)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 승인을 받은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제공범위,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간주통과)

- ①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우연하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하 “간주통과자”라 한다)은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간주통과자는 습득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8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

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제11조, 제12조, 내부통제기준 제64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임직원의 의무)

임직원은 매매거래 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준법감시인의 확인 권한)

- ①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부서장, 해당 계열회사등 제3자의 준법감시부서에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의 제공부서에 해당 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 차단 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등 제3자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비밀보장의 유지·관리

제19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정보고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20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정보 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 등)

- ① 비밀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부서의 해당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배포·통제에 관한 감독 및 통제는 해당 부서장을 책임자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비밀정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22조(비밀정보 제공 절차)

- ①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부서내의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한 제공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부서내의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승인문서(품의, 기안)에 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 제공·접근의 승인을 요청한 자의 성명
 2. 비밀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의 소속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3. 비밀정보 제공·접근의 필요성 또는 사유
 4. 비밀정보 제공·접근 방법 및 절차
 5. 비밀정보 제공 일시
-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업무제휴 등의 사유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장 일반적 이해상충 요소의 파악·평가시스템

제23조(목록작성 및 보고)

- ① 회사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관련 법규정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규제적,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실제적인 이해상충 요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③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이해상충의 제거 또는 완화를 위한 적절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제24조(절차)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의 파악·평가·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법을 사용한다.

1. 1단계로 잠재적, 실제적인 이해상충 요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2. 2단계로 수집된 이해상충 요소를 규제적, 법적 및 평판 리스크 측면에서 분석한다.
3. 3단계로 최종 분석의 결과 및 필요시 권고안을 도출한다.

제25조(평가 실행)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상적인 평가는 판매영역, 수익과 비용의 원천, 고객·계열회사 및 서비스제공업체 영역으로 나누며, 세부항목은 [별표4]의 1 내용과 같고,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다. 이해상충 요소의 파악·평가지 [별표4]의 2 서식에 의한다.

제26조(평가결과 보고 및 시정)

이해상충 요소의 평가 결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의 해당영역 담당본부장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방안을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는 업무에 이를 반영하여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일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별표], [별지]는 준법감시인 전결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조사분석업무]와 [기업금융업무] 간	
설치 면제	•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기업의 가치분석과 관련 없는 일반적 현황 등을 교육	
	[Wholesale 업무]와 [조사분석업무]	
설치 면제	•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기업의 가치분석과 관련 없는 일반적 현황 등을 교육	
사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계열회사] 간	
	설치 면제	• 투자자의 지위에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기 위하여 회의·통신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
	설치 면제	•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업무 자문을 위한 경우

2. 상시적 정보교류 차단

구분	차단 방법
사무공간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임직원 간에 접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사무공간을 분리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신설·이동 등 재배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준법관리 부서와 협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내 정보에 대한 접근·취득 권한을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단위로 구분하여 전산시스템 정보사용 권한을 분리 • 전산시스템 정보 사용권한에 대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준법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
회의(통신)기록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임직원 간에 회의·통신하는 경우 회의(통신)기록을 준법관리 부서에 제출(단 통신 내용이 모두 저장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한 것으로 같음) • 회의(통신)록 포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통신)명, 회의(통신)참여자 소속 부서명 및 성명, 회의(통신) 목적, 회의(통신)일시 및 방법, 회의(통신)주요 내용 - 회의주요 내용은 전부 녹음 또는 의사록 등으로 그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관리 부서 임직원이 동참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 가능

3.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대상 목록 지정 기준

구분	지정 기준
거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회사를 자본시장법 제 133 조제 2 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01 조제 1 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구분	이해상충 거래 유형	대응 방안
과당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게 빈번한 금융투자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회전율과 손실률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위험 안내 및 적정성 점검 실시
선행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그 주요 내용을 제공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공표 전 조사분석자료 공유 및 제공 금지(회의 기록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대량매매 주문 정보를 활용하여 고유재산운용에 활용하는 거래 	대량매매 처리 시 고유재산 및 담당 임직원 거래 특이사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금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재산으로 매매 	기업금융 업무 거래상대방 및 해당 증권을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종목으로 관리
인수관련 이해상충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상장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수관련 계약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조사분석자료를 이해관계 고지 없이 공표 회사가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거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회사의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여 부당하게 소유하는 경우 	인수한 계열회사 증권 처분 여부 및 부당한 매매 행위 점검

